

의안번호	2220674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6. 8. 28.
추계번호	26C409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 위촉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4억 7,100만원(연평균 4억 9,4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임위원 위촉(안 제103조제2항)	449	470	493	517	542	2,471	494

I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3조 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 제2항	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	의무규정

1)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(안 제5조제2항)·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(안 제103조제2항)·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(안 제103조의3제3항)·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(안 제104조제2항)의 위촉위원 구성(상세 자격 및 자격자 별 위원 수)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개정안 시행 시 위촉위원의 수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2명 감소,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는 1명 감소,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관련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3조 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 제2항	○	○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인건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²⁾
-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(사용자 대표, 근로자 대표, 지역 가입자대표, 관계전문가 등)은 모두 비상임위원임

2) 개정안 제103조의3제3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상근위원 위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현행법 제103조의3제4항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현행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이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중 3인을 상근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 시행 시 현행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현행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중 3인을 상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므로,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도 동일한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2022~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서³⁾에 편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인건비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인건비 단가

(단위: 천원/월, %)						
구 분	2022	2023	2024	2025	2026	연평균 증가율
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인건비 지급 단가	9,838	10,045	10,306	13,398	11,885	4.8

자료: 보건복지부 사업설명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

□ 추계결과,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 위촉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4억 7,1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인건비 지급 단가(천원/월, A)	12,460	13,063	13,695	14,358	15,053	-	-
지급 인원 수(명, B)	3	3	3	3	3	-	-
지급 개월 수(개월, C)	12	12	12	12	12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	449	470	493	517	542	2,471	494

주: 추가재정소요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